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1차 재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감<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원>채용시험 1차 재공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6. 28.

**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**

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예정 직무분야	채용등급	채용 인원	채용기간 (근무시간)	직무내용 (담당업무)	근무 부서
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원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“마” 급 (9급상당)	1명	임용약정일 ~ 1년 (주35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리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</li> <li>- 안전검사 이행명령 및 독촉</li> <li>- 안전검사 미수검 주차장 과태료 부과</li> <li>- 시설물철거 및 신설·재설치 안내 및 독촉</li> <li>- 기타 기계식주차장 관련업무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처리 및 환경정비 등</li> </ul> </li> </ul>	서구청 주차관리과 (주차행정팀)

- \*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- \*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
- \*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

### 2. 근거법령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3조의 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
-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별표 13, 제35조 (신규임용 시 연봉책정)

### 3. 응시자격

#### □ 응시자격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
#### ▶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- 성 별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거 주 지: 제한없음

○ 나 이 : 18세이상

○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
○ 자격기준(공고일 현재 기준)

채용예정분야	자격요건
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원	○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실제 운전을 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: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기계설비 운전·관리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·보수 업무 경험자

※ 컴퓨터 관련 자격증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등) 소지자 우대
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또는 행정사무 실무 경력자 우대

#### 4. 복무조건 및 보수

##### □ 복무조건

○ 채용기간 : 임용약정일 ~ 1년.

(※ 근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(최장 5년까지))

○ 근무시간 : 주35시간(중식시간 제외)

○ 근무부서 : 서구청 주차관리과(주차행정팀)

○ 복무기준

-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및 『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』를 준용하되,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(토·일·공휴일, 야간근무 등)은 부서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

##### □ 보수수준

○ 연 봉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제34조 별표 13

구 분	연봉액	비고
시간선택제임기제 “마” 급 (9급 상당)	21,182천원	48,415천원[9급(상당) 상한액] × 50% × 35시간/40시간

○ 연봉 외 급여 : 『지방공무원보수규정』 및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급

## 5. 시험방법

### □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(자격기준 요건 등)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### □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# □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  - \*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.
- 동점자 처리
 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 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## 6. 시험시행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 6. 28 .(월) ~ 7. 8.(목)	2021. 7. 6.(화) ~ 7. 8. (목)	2021. 7. 19. (월)	2021. 7월 중	2021. 7월 중

※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(seo.incheon.kr) 채용소식란에 공고

※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

※ 상기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## 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1. 7. 6.(화) ~ 2021. 7. 8.(목)

다. 응시원서 접수처 : 서구청 총무과[인사팀]

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### ○ 우편 접수 시

- 주소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동봉
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☞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
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## 8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○ 응시수수료 : 5,000원

[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)]

- 방문접수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)

- 등기우편 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나. 이력서 1부 <서식2>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<서식3,서식4>

※ A4용지 각 1~2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## 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<서식5>

### 마. 경력증명서 1부

- ※ 공고일 기준 **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**
- ※ **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**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- 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(**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**)
- ※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**주당 근무시간,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(날인) 받아 제출**
- ※ **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**
- ※ *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, **미제출 시 불인정**
- ※ 재직기간, 인사이동사항, 직위·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.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

\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

☞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, 2019. 12.26.)

1.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: 3년 인정
2.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  -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3.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(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)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
  -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,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

### 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(경력확인용)
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※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**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**

※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

사.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.

아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.(해당시)

자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차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

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현주소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카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타.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<서식9>
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## 9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 관련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032-560-4104)
- 담당직무 관련문의 :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(☎032-560-0837)